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2가단51421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이철우

피고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운

변론 종결2024. 10. 29.

판결 선고2024. 11. 26.

주 문

-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가. 피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D 사이에 '주식회사 D가 E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F 아파트 중 2공구 공사대금 550,00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2020. 8. 22.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D에게 제1의 가.항 기재 양수채권에 기한 공탁금출금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 2021년 금 제779호 관련)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① 피고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 사이에 '주식회사 D가 E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F 아파트 중 2공구 공사대금 1,320,00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2020. 11. 26.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② 피고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D에게 위 ①항 기재 양수채권에 기한 공탁금출금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 2021년 금 제779호 관련)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금전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자재대금, 대여금 등을 원인채권으로 하여 2020. 8. 22. 기준으로 811,600,000원의 어음채권을, 2020. 11. 11. 기준으로 1,072,300,000원의 어음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20. 12. 2.부터 2021. 4. 2.까지 사이에 부도가 나 지급이 거절된 어음의 합계액은 1,292,300,000원이다.

나. D의 E에 대한 채권의 양도 관련 및 E의 공탁

1) D는 2020. 3. 25.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E로부터 F아파트 중 2공구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6,736,093,286원에 발주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하도급공사에 착공하였다.

2) D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G, H와 사이에, D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E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 하고, 피고별로 구분하여 채권양도계약을 특정할 때는 채권양도계약 체결 일자를 기준으로 '이 사건 O자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1	G	2억 원	2020. 6. 11.	2020. 12. 3.
2	H	5억 원	2020. 11. 5.	2020. 12. 3.
3	피고 B	5억 5,000만 원	2020. 8. 22.	2020. 12. 4.
4	피고 C	13억 2,000만 원	2020. 11. 26.	2020. 12. 4.

3) E은 2021. 3. 17.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수개의 채권양도, 채권가압류, 채권압류가 경합하고 있어 공사대금의 정당한 수령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D와 피고들 등으로, 공탁원인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하여 D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채권 중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대금 잔액 374,885,871원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년 금제779호로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

다. D의 무자력

D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D에 대하여 기초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각 사해해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D에게 각 양수채권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각 양도하고, 각 대한민국(소관: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나. 피고 C의 주장

1) 이 사건 공탁금은 374,885,871원에 불과한데, 피고 C보다 선순위 채권 양수인들인 G, H의 양수금 채권의 합계액은 7억 원에 이른다. 따라서 G의 2020. 6. 11.자 채권양도계약 및 H의 2020.

11. 5.자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될 경우 피고 C는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출급청구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2) 피고 C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피고 B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을나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3490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2024. 6. 21. 'H의 이 사건 2020. 11. 5.자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C가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출급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기초사실 제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의 이 사건 2020. 11. 26.자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D에 대하여 1,072,300,000원의 어음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어음채권은 피고 C의 이 사건 2020. 11. 26.자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2020. 11. 26.자 채권양도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는 D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채권을 양도받는 것은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 C의 이 사건 2020. 11. 26.자 채권양도에 경제적 목적에 따른 정당성이나 행위의 의무성, 상황의 불가피성 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020. 11. 26.자 채권양도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사해의사의 존부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이 사건 2020. 11. 26.자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에게 채권양도를 하였으므로, D는 이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으로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채권자들이 장차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D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

마. 피고 C의 선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 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등 참조).

2) 피고 C의 선의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는 이 사건 2020. 11. 26.자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D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가) 피고 C는 등록대부업체로서 통상적으로 D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해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피고 C가 D의 자력 여부나 채무를 알 수 있을 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 C는 D와 계속된 금전 대여 관계에 있었는데, D가 2020. 11. 10. 착오로 피고 C에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자, D는 위 금액을 바로 반환해 주기도 하는 등 이 사건 2020. 11. 26.자 채권양도계약 체결 시점과 근접한 시기에도 D의 채무관계 등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D는 피고 C와 체결한 대부거래약정에 따라 이에 관한 이자를 꾸준히 변제하였고, 위 약정에서 정한 변제기에 대여금을 변제하여 오고 있었다. 현재 D가 피고 C에게 변제하지 못한 대여금은 모두 2020. 11. 26.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C의 입장에서는 D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 C는 2020. 10. 12.경에도 D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피고 C가 대여금에 관하여 채권양도를 받은 것이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바.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근영